

건설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간선도로 및 생활도로망 확충

- ◆ 구민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중기재정계획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민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도로망확충 관련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는 개별소유자가 이주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구홈페이지, 내고장사하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 ◆ 도로망확충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은 가급적 소유주의 현장 입회하에 조사하고 해당물건이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 ◆ 보상금 지급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규정을 지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 각종 도로공사 설계시 장래의 교통망 형성, 주변 지형여건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고 주변지역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도로개설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 1억 이상 사업장은 사업설명회와 명예감독 임명, 기타 사업장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구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과 구청, 시공자가 함께 관리·감독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 ◆ 낙동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와 교량, 육교, 맨홀 등 도로시설물(영조물)에 대해서 주3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보수·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도로파손 및 보관침하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불편사항을 신고(☎220-4661~6)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상수도·통신시설, 도시가스, 전력시설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작업시간 조정, 조속한 복구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단속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단속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화재등 비상시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 ◆ 도로·구거·하천 등 국·공유재산의 카드화전산화 관리로 국·공유재산의 본래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도로 및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부를 처리하되 법정처리기한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으며, 점용·사용료를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일반허가 관련 민원서류는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봉사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4. 교통안전시설 설치

- ◆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 이면도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수시로 설치·정비 하겠습니다.
- ◆ 민원서류별 처리기간의 이행은 민원접수 당시 개별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접수·문의창구

서비스명	담당	전화번호	팩스 (FAX)
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 (구거)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잠사용료 과징도로개설 공사 보상·수용·등기촉탁	건설행정담당	220-4631~9	220-466 9
보차도점용허가, 골재채취업등록 및 허가, 전문건설업등록, 노점상단속	도로관리담당	220-4661~6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괴정, 당리, 하단), 도로굴착허가	토목1담당	220-4691~5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	토목2담당	220-4701~4	

6. 고객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

- ◆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의 보상협의를 법적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사가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불편 사항이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주시고,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불편사항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